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. 1. 27 선고 2021가단190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
말소등기절차이행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2. 1. 20.

판 결 선 고 2022. 1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4. 11. 23. 접수 제278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.

이 유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에 한함).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허민

별지